금융지주회사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1. 2014고단5710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사】장영섭(기소), 김영오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청신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6,000,000원에 처한다.

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